

의안번호	제 463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2 월 3일 (제 286 회)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 면 해 제 촉 구 건 의 안**

제 안 자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제안연월일	2010년 1월 28일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제 463 호
----------	---------

제안연월일 : 2010. 1. 28

제 안 자 :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우리도의 3개국립공원(속리산, 월악산, 소백산)내의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를 전면해제 하여 즐것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충북은 16개 시도중에 제주도 다음으로 작은 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요시설이 산재해 있음

<국가 주요시설>

- 댐3개소(충주댐, 대청댐, 괴산댐)
- 국립공원3(전국20)개소 :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 전투비행장 2개소(청주 17전투비행장, 충주 19전투비행장)
- 탄약창(기지창 포함) 4개소

나. 40년전 국립공원 구역조정 당시 행정편의 위주로 설정된 것이기에 40년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해소

다. 해제요구 지역은 전·답·대지 등으로 공원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으며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에 비효율적임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정운찬 국무총리님!

이만의 환경부장관님!

충청북도는 16개시도중에 제주도 다음으로 작은 도임에도 불구하고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 등 3개의 댐과 3개의 국립공원(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전투비행장 2개소, 탄약창 4개소, 등 국가 주요시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지역이 지리적 여건이 좋고 도민들의 심성이 온후하여 이러한 주요시설의 입지가 타 지역보다 유리했었다는 말도 설득력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법 제11조, 제15조,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6월에 국립공원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구역 조정시 4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유재산권의 침해받은 사항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으로 지내온 지역주민들은

이번이 평생에 마지막 기회일거라는 기대감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대부분은 공원으로로서의 가치가 없는 전·답·대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많은 면적을 그대로 둔다면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정부시책에 협조해온 주민들의 순수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해제와 더불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또 다른 규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세종시 건설, 4대강추진사업 등으로 인하여 매우 민심이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잘 알고계시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국립공원내에 산재해 있는 사유농경지에 대하여 전면해제하여 주시고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주시고 국립공원 구역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총량제 관련 지침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정시 사유재산권 침해내지는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농촌서민생활에 편리하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국립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40여년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의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2월 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